기숙사 운영 규정

제정 2016년 08월 19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명칭은 기숙사라 한다.

제3조(개관기간) 기숙사 개관기간은 본 대학 개학기간에 따른다. 단, 필요에 따라 관장 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, 단축 또는 휴관 할 수 있다.

제4조(이용제한) ①기숙사 개관기간이 아닌 기간에 기숙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숙사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학생 이외의 단체로서 기숙사의 시설물을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관생자치 활동) 관생 자치 활동은 기숙사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한다.

제6조(기숙사 운영 세부사항) 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.

제2장 운영조직

제7조(운영조직) ①본 기숙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. ②관장과 직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 총장이 임명한다.

③관장은 기숙사의 제반업무를 지휘, 감독한다.

제3장 재정

제8조(회계) ①기숙사의 회계는 학교회계에 포함한다.

②기숙사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9조(기숙사비) ①관생은 기숙사비(입사비, 관리비 및 식비)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기숙사비의 책정과 납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수납된 기숙사비의 환불은 반환사유 발생일이 입사 전의 경우 이미 낸 기숙사비 전액을 반환하고, 반환사유 발생일이 입사 후의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
제4장 입사 및 퇴사

제10조(입사자격) 입사자격은 본교의 재학생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입·퇴사) 입사 및 퇴사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제12조(입사기간) 입사기간은 학사일정에 준하여 1년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입사생 선발기준) 입사생의 선발기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- 1. 외국인 유학생
- 2. 국내 워거리 거주자
- 3. 성적우수자
- 4. 국가보훈대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
- 5. 품행이 단정한 자

제14조(입사자격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- 1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2. 퇴사 처분을 받은 자
- 3. 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
- 4. 휴학 중인 자
- 5. 기타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5조(퇴사)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퇴사 처분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관생수칙을 위반하였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
- 2. 기숙사비를 체납한 자
- 3.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
- 4.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